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81
----------	-------

발의연월일 : 2025. 7. 15.

발 의 자 : 이광희 · 조계원 · 허성무
박해철 · 김문수 · 이재강
민병덕 · 채현일 · 윤건영
황명선 · 문금주 · 김우영
박지원 · 임미애 · 김승원
장종태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도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심리 및 판결이 공개되고 기록 열람이 가능함.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권의 신뢰를 높이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사법부의 투명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재판기록의 공개) ① 각급 법원은 확정된 판결문, 결정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공개하는 경우 기록의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비식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국가안보,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기록 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의3(전자적 재판기록 공개체계의 구축·운영) 법원행정처는 제57조의2에 따른 재판기록의 공개 및 기록의 효율적인 열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열람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기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생성된 재판기록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재판기록 공개를 위한 준비행위)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이전에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7조의2(재판기록의 공개) ①</u> <u>각급 법원은 확정된 판결문, 결</u> <u>정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u> <u>재판기록을 일반에 공개하여야</u> <u>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재판기록을</u> <u>공개하는 경우 기록의 일부가</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때에는 해당 부분은</u> <u>「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u> <u>가명처리 및 관계 법령에 따른</u> <u>비식별 처리를 하여야 한다.</u> <u>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u> <u>제1호의 개인정보</u> <u>2. 국가안보, 개인의 생명 또는</u> <u>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u> <u>있는 정보</u> <u>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u> <u>하는 정보</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u> <u>판기록 공개의 범위, 절차 및</u> <u>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u> <u>규칙으로 정한다.</u>

<신 설>

제57조의3(전자적 재판기록 공개 체계의 구축·운영) 법원행정처는 제57조의2에 따른 재판기록의 공개 및 기록의 효율적인 열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열람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